

I. 검역/통관 규정 일반

1. 통관/검역제도 개요

유럽연합 회원국은 공동관세율 (Common Customs Tariff)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각국의 관세 역시 원칙적으로 동일하나 수입부과세 및 부가가치세는 국가별로 다르고, 유럽연합 각 회원국의 세관 및 통관절차, 구비서류 등은 각국별로 다를 수 있음

가. 통관절차 일반

수입업체는 물건이 도착했다는 통보를 받고 상업용 송장, B/L, 패킹리스트 및 기타 수입허가서(검역증명서 등) 운송회사 또는 통관을 전담하는 회사에 의뢰하여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관세를 납부한 후 통관함.

수입된 물건들은 일단 보세창고에 단기 혹은 장기 보관되며, 단기 보관용 보세창고는 운송회사나 통관 전문업체들이 이용하며 해상운송 수입품의 경우 수입신고 후 45일, 육로나 항공 송 수입품은 20일간 보관할 수 있고, 장기 보관 보세창고의 경우 보관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음

나. 구비서류 일반

T1 :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통관하는 경우 사용, 예) 제 3국(유럽연합 회원국 포함)에 수출하는 경우 마지막 인수자가 해당국에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또는 통관을 보세창고에 임시 보관한 후 제 3국에 운송하는 경우에도 T1 수입신고서 작성.

T2 : 관세를 부담하고 통관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양식 사용

다. 관세 및 부가가치세 일반 현황

○ 관세현황

관세법은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여 유럽연합으로 유입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되며, 운송 및 무역서류를 토대로 상품이 항구에 입항 및 공항에 착륙하기 전에 해당상품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세관에 통보되고, 이를 토대로 세관은 상품이 도착했을 때 관련 사항을 통보하게 되는데 이를 물류의 국고주의라고 하며 유럽연합은 이를 적용.

유럽연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관세법은 1992년 10월 12일자 유럽연합 규정 EEG No. 2913/92 및 이후 수정 및 개정된 규정을 따름.

유럽연합에 상품이 수입될 경우 발생하는 각종 부과금 책정 근거

- ✓ 해당상품의 관세부과가액 결정
- ✓ 각 제품별 관세율 적용
- ✓ 제품의 원산지 확인 등

관세는 표준관세와 양허관세로 구분되고 표준관세는 다시 일반관세 및 ACP 국가 등에 적용되는 특혜관세로 구분

○ 관세할당 (tariff quota)제도

수입물량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 수입되는 특정 물품에 대해 할당량까지는 저세율(또는 무세)을 적용, 그것을 초과하는 것에는 고세율을 적용함. 사전할당제도(미리 저관세율 적용수량을 정하여 그 수량을 사전에 할당하는 방식)와 선착순방식 (저관세율 적용수량을 정해놓고 선착순으로 저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두가지가 있음.

또한 자국의 상품을 수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입부과금 제도로 수입상품의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켜 수입량을 감소시키는 관세장벽이 있음.

EU 회원국의 경우 회원국 외부교류규범은 대체로 EU 규정으로 정해져 있으며,

EU와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 국가들 간의 특별조약도 존재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EU에서 유통시킬 목적으로 상품이 수입되었을 때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수입상품일 경우 부가가치세는 수입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토록 규정

유럽연합 국가의 부가가치세율은 아래와 같음.

(단위:%)

국가명	표준부가가치세율	감면부가가치세율
벨기에	21	6 / 12
불가리아	20	7
체코	19	9
덴마크	25	-
독일	19	7
에스토니아	18	5
그리스	19	9
스페인	16	7
프랑스	19,6	5,5
아일랜드	21, 5	13,5
이태리	20	10
사이프러스	15	5 혹은 8
라트비아	21	10
리투아니아	19	5 혹은 9
룩셈부르크	15	6 혹은 12
헝가리	20	5
몰타	18	5
네덜란드	19	6
오스트리아	20	10
폴란드	22	7
포르투갈	20	5 혹은 12
루마니아	19	9
슬로베니아	20	8,5
슬로바키아	19	10
핀란드	22	8 혹은 17
스웨덴	25	6 혹은 12
영국	15	5

주: 2009년 1월 기준

EU 회원국 중 아일랜드는 특정 식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 및 음료에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외에도 사이프러스, 몰타, 영국이 식품에 0%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국가명	0% 부가가치세 적용제품	제외 제품
아일랜드	식품 및 음료	주류, 가공음료, 아이스크림, 과자류
사이프러스	식품 및 음료	케이터링 제품, 주류, 아이스크림, 과자류
몰 타	식품 및 음료	사전조리식품, 주류, 아이스크림, 과자류
영 국	식품 및 음료	사전조리식품, 아이스크림, 과자류, 가공음료

라. 잔류농약 등 성분 기준

EU에서는 소비자가 섭취해도 안전한 최대 농약 잔류량 (Maximum Residue Limits, MRLs)을 정하고 모든 식품과 사료에 적용하고 있음.

2008년 9월까지 유럽 연합의 약 45,000가지의 농약에 MRLs이 설정되었고 최근에는 유럽 연합 회원국가들의 MRL Harmonisation Programme에 의해 약 100,000여가지로 증가됨.

MRLs 은 과일 및 채소 (76/895/EEC), 시리얼 (86/362/EEC), 육류 제품 (86/363/EEC), 과일 및 채소 제품 (90/642/EEC), 총 4가지 영역에 설정되어 있음. 과일 및 채소의 주요 농약 잔류량 허용치를 보면 아래 <표 II-3>과 같음.

EU Commission 웹사이트에서는 제품별 해당 농약과 잔류량 허용치 또는 농약 성분별 잔류량 허용치 검색을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음 (http://ec.europa.eu/sanco_pesticides/public/index.cfm)

과일 및 채소의 주요 농약 잔류량 허용치

Groups and examples of individual products	Pesticide residues and maximm residue levels(mg/kg)		
	Trifornie	Endosulfan	Fentin
1. Fruit, fresh, dried or uncooked preserved by freezing, not containing added sugar, nuts.			
(i) Citrus Fruit	0.05	0.5	0.05
Grppefruit			
Lemons			
Limes			
Mandarins(including clementines and other hybrids)			
Oranges			
Pomelos			
Others			
(ii) Tree Nuts(shelled or unshelled)	0.05	0.1	0.05
Almonda			
Brazil Nuts			
Cashew nuts			
Chestnuts			
Coconuts			
Hazelnuts			
Macadamis			
Pecans			
Pine nuts			
Pistachios			
Walnuts			
Others			
(iii) Pome fruit	2	0.3	0.05
Apple			
Pears			
Quinces			
Other			
(iv) Stone fruit	2	0.05	0.05
Apricots			
Cherries			

Groups and examples of individual products	Pesticide residues and maximum residue levels(mg/kg)		
	Triforin	Endosulfan	Fenitrothion
Peaches(including nectarines)	0.05	0.5	
(v) Berried and small fruit	0.05		
(a) Table and wine grapes	0.05	0.05	
(b) Strawberries(other than wild)	0.05	0.05	
(c) Cane fruit(other than wild)	0.05	0.05	
(d) Other small fruit and berries	0.05	0.05	
(e) Wild berries and wild fruit	0.05	0.05	
(vi) Miscellaneous	0.05	0.05	0.05
2. Vegetables, fresh or uncooked, frozen or dry	0.05	0.05	
(i) Root and Tuber Vegetables			0.05
Beetroot		0.05	
Carrots		0.05	
Celeriac		0.05	
Horseradish			
Jerusalem artichokes			
Parsnips			
Rarsley root		0.05	
Radishes			
Salsfy			
Seweet potatoes			
Swedes		0.05	
Turnips		0.05	
Yams			
Others	0.05	0.05	
(ii) Bulb Vegetable	0.05	0.05	0.05
Garlic			
Onions			
Shallots			
Spring onions			
Others			

Groups and examples of individual products	Pesticide residues and maximm residue levels(mg/kg)		
	Triforine	Endosulfan	Fentin
(iii) Fruiting Vegetables			0.05
(a) Solanacea		0.5	
Tomatoes		0.5	
Peppers		1	
Aubergines		0.05	
Others		0.05	
(b) Cucurbits–edible peel	0.5	0.05	
Cucumbers			
Gherkinds			
Courgettes			
Others			
(c) Cuburbits–inedible peel	0.05	0.3	
Melonds			
Squashes			
Watermelons			
Others			
(d) Sweetcorn			
(iv) Brassica Vegetables		0.05	0.05
(a) Flowering brassica			
(b) Head brassica			
(c) Leafy brassica			
(v) Leaf vegetables and fresh herbs	0.05	0.05	0.05
(a) Lettuce and similar			
Cress			
Lamb's lettuce			
Lettuce			
Scarole			
Others	0.05	0.05	
(b) Squinach and similar			
Spinach			
Beet leaves(chard)			

Groups and examples of individual products	Pesticide residues and maximum residue levels(mg/kg)		
	Trifornie	Endosulfan	Fentin
Others	0.05	0.05	
(c) Watercress	0.05	0.05	
(d) Witloof	0.05	0.05	
(e) Herbs	0.05	0.05	
Chervil			
Chives			
Parsley			
Celery leaves			
Others			
(vi) Legume Begetables(fresh)	0.05		
(vii) Stem Vegetables(fresh)		0.05	0.05
Asparatus			
Cardoons			
Celery leaves			
Fennel			
Globe artichokes			
Leeks			
Rhubard			
Others	0.05	0.05	
(viii) Fungi	0.05	0.05	0.05
(a) Cultivated mushrooms			
(b) Wild mushrooms			
3. Pulses	0.05	0.05	0.05
4. Oil seeds	0.05		0.05
5. Potatoes	0.05		0.1
6. Tea(black tea processed from the leaves of Camellia sinensis)	0.1		0.1
7. Hopes(dried), including hop pellets and unconcentrated powder	30		0.5

2. 품목별 통관/검역 제도

가. 육류 및 육류 가공식품

신선육 및 육류 가공식품의 EU 지역 내 수입은 Directorate-General for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에서 인정하는 비(非) EU 국가 행정기관이 발급한 수의 검역 증서 (veterinary certification) 소유 여부에 달려 있음.

이 수의 검역 증서는 한국 내 관리 관청을 통해 해당 EU 부서와 접촉해야 발급 받을 수 있음.

○ 육류 및 육류 가공제품 수출 자격 국가의 조건

수출 국가가 적격한 수의 검사 기관이 있어 전 식품제조과정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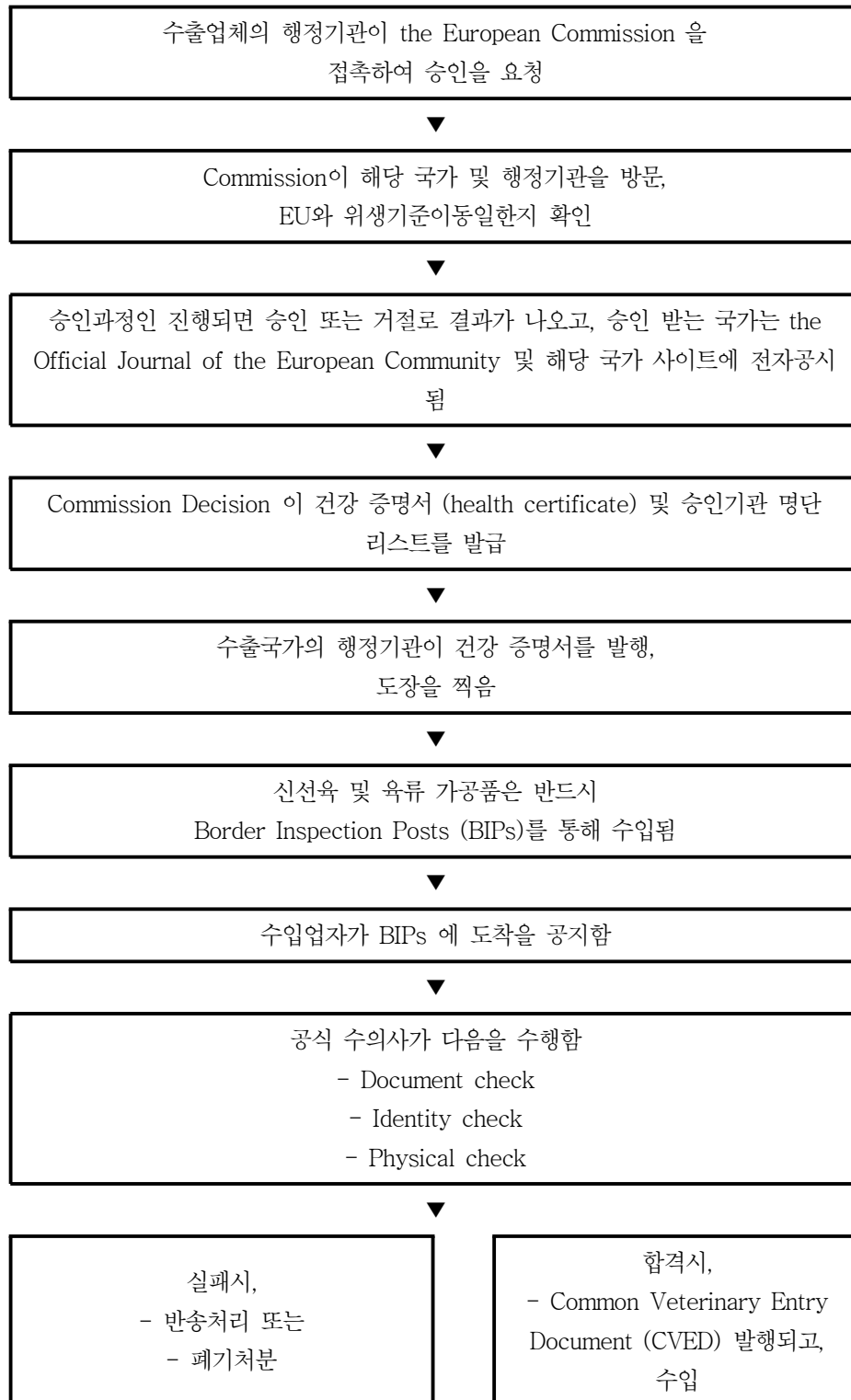
수출국가가 적절한 동물 건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즉, 수출국가가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OIE)의 회원이어야 하고 그 기관의 기준도 보고 의무를 다해야 함.

국가 기관이 반드시 적절한 위생 및 공공 건강에 대한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위생법은 도살장 구조, 도살 과정 및 도구, 육류를 자르고 보관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특정 기준을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감독 과정은 높은 기준을 확보함으로써 제품의 제조 및 준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을 차단하기 위함.

수의약품, 살충제 및 기타 오염물질의 잔여물 정도가 EU 기준에 수용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함.

이러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적격한 기관에 의해 기획되고 European Commission에 승인안을 제출하고 해마다 갱신해야 함.

육류 및 육류 가공제품의 수입절차



수입은 반드시 수출국가의 해당 관청에 의해 EU 요구조건에 충족하는지를 검사받은 승인된 기관에서만 인증되어야 함.

소, 양, 염소를 수입할 시에는 수출국가가 BSE 상태 측정을 신청해야 함. 이 상태는 위험평가 및 특정 BSE와 관련된 수입조건과 관련되어 있음.

Commission의 Food and Veterinary Office에 의한 조사는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임. 이러한 조사는 EU Commission과 수출국가 관청의 신뢰성 구축의 바탕임.

2009년 10월 현재 우리나라는 육류 수입 승인 국가 명단에 있지 않음.

나. 수산물

수산물의 EU 지역 내 수입은 Directorate-General for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에서 인정하는 비(非) EU 국가 행정기관이 발급한 공식 인증서 소유 여부에 달려 있음.

이 공식인증서는 수출자격이 있는 국가에 사전 발급되어 EU 국가로의 수출을 승인받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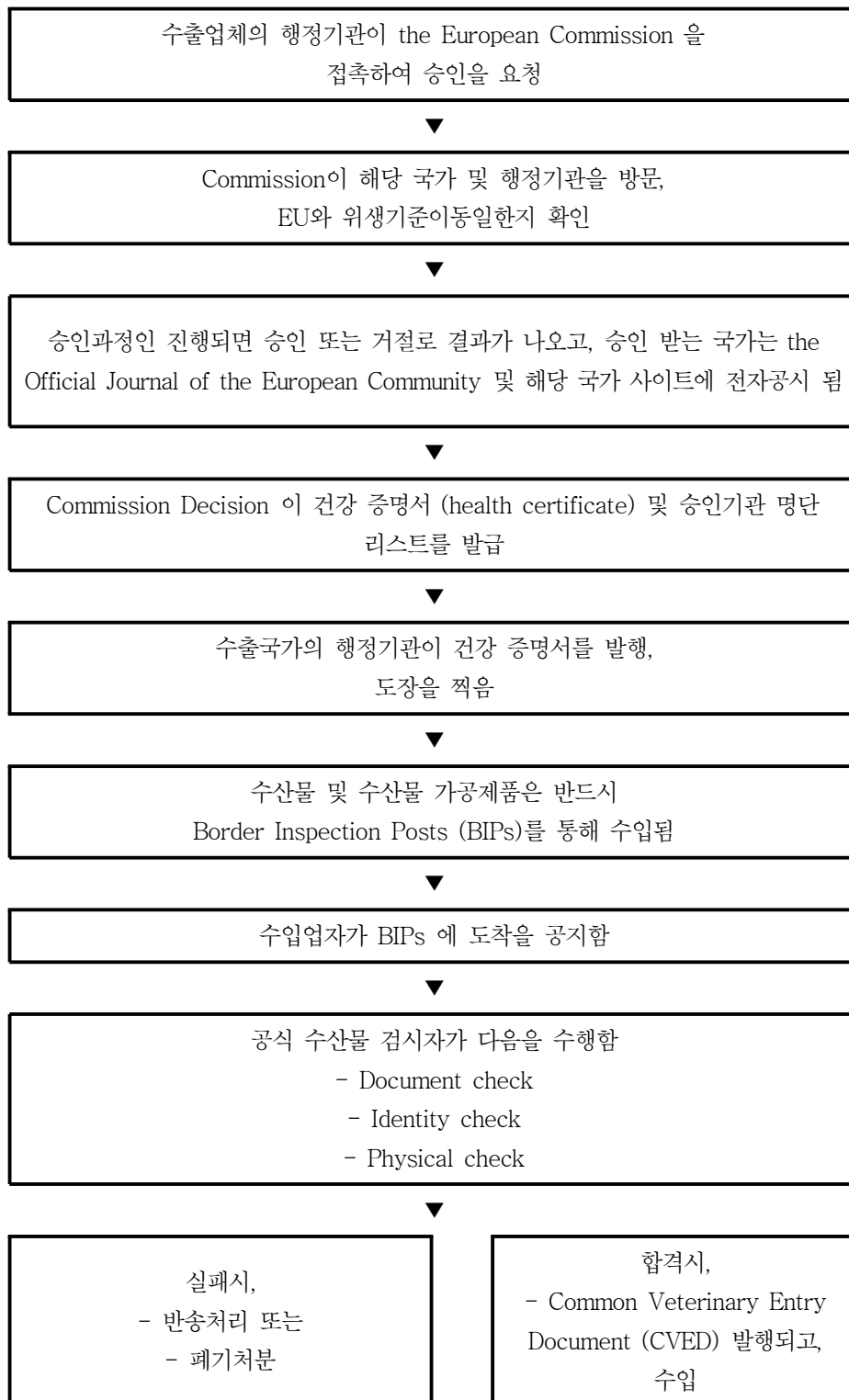
○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제품 수출 자격 국가의 조건

수출 국가가 적격한 공식적인 검사 기관이 있어 전 식품제조과정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함.

번식을 위한 살아있는 생선, 알, 및 생식체, 그리고 살아있는 패조류는 반드시 적절한 동물 건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수의 서비스가 모든 필요한 격강 검진 및 모니터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국가 기관이 반드시 적절한 위생 및 공공 건강에 대한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위생법은 배의 구조, 선착장, 운반과정, 냉동 및 보관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특정 기준을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감독 과정은 높은 기준을 확보함으로써 제품의 제조 및 준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을 차단하기 위함.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제품의 수입절차



살아있는 패조류의 수입에는 특정조건이 적용됨. 수입승인이 된 지역에서 제조된 제품만 수입이 가능함. 수출국가는 패혈증을 일으키는 특정 독소의 오염이 차단된 공간인지를 면밀히 감독하여야 함.

양식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EU 기준에 중금속, 오염물질, 살충제 잔여물, 수의약 등이 맞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감독 계획을 세워야 함.

이러한 감독계획은 적격한 기관에 의해 기획되고 European Commission 에 승인을 제출하고 해마다 갱신해야 함.

수입은 반드시 수출국가의 해당 관청에 의해 EU 요구조건에 충족하는지를 검사받은 승인된 기관에서만 인증되어야 함.

Commission의 Food and Veterinary Office에 의한 조사는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임. 이러한 조사는 EU Commission과 수출국가 관청의 신뢰성 구축의 바탕임.

2009년 10월 현재 우리나라는 육류 수입 승인 국가 명단에 올라있으며 수출허가를 받은 업체는 패조류에 총 10개 업체, 수산물에 총 230개 업체가 있음.

다. 과실류

식물의 병충해나 미생물 등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76년 12월 21일 EU규정 77/93/EEC에 명시, 유럽연합 각 회원국의 식물검역국은 수입되는 식물들의 검사와 병리 유전인자 및 미생물의 발견 및 조절을 담당

EU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되는 식물은 수출국의 공인 식물검역국의 검역증(Phytosanitary Certificate)이 첨부되어야 하며 이 검역증을 근거로 하여 세관은 수입품의 통관을 허가하며, 수입품의 수취인은 이 사실을 식물검역국에 신고하여 수입검역 시행

수입검역의 목적은 수입된 식물에 병이나 박테리아 등의 잔존여부를 파악하는데 있으며 병이나 박테리아 등이 발견되는 경우 유해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시행 식물검역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화훼, 구근, 과일, 종자, 묘목, 씨앗, 접목목재 등이며 식물검역증의 발급에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수출국, 원산지 국가의 공인 식물검역국에 의해 발행
선적전 14일 이내에 발급

EU 회원국의 공식어로 기재

도장이나 사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타이핑할 것

식물학명 사용 및 식물원산지 기재

검역증명서 사본의 경우 "Copy" 혹은 "Duplicate"라는 스탬프를 첨가하여야 함
식물검역국의 도장과 위임자의 이름, 사인 기재

삭제부분이 없어야 함

EU내의 보호지역에 수출이 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증명서에 해당 식물이 보호
지역으로 수출된다는 사항 표시

식물수입 시 식물검역증명서가 부재인 경우에는 물품을 반송시키거나 수입자와
상의하여 폐기조치, 단, 수입업자는 수출국에 검역증명서를 재신청할 기회가 주
어지며 재발급 검역증명서에 공식적으로 재검역증명 번호, 날짜 기재, 수출국의
식물검역국에 이에 대한 하자 요인 통보

3. 자료출처 및 사이트

■ 농약 잔류 허용량 관련

http://ec.europa.eu/food/plant/protection/pesticides/index_en.htm

http://ec.europa.eu/food/fvo/index_en.htm

http://ec.europa.eu/food/fvo/specialreports/pesticides_index_en.htm

<http://www.efsa.europa.eu>

<http://www.crl-pesticides.eu>

■ 부가가치세 관련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taxation/vat/traders/vat_community/index_en.htm

■ 검역 및 통관 관련

http://ec.europa.eu/food/index_en.htm

http://ec.europa.eu/food/animal/animalproducts/index_en.htm

http://ec.europa.eu/food/food/biosafety/hygienelegislation/index_en.htm

http://ec.europa.eu/food/food/biosafety/establishments/third_contry/information_en.htm

http://ec.europa.eu/food/international/trade/third_en.htm

4. 관련 기관 연락처

가. 일반 통관 및 검역

국가	기관명	Email/website	전 화	기 타
EU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food/index_en.htm	+ 32 (0)2 295641	주소: Directorate D, Health & Consumers Directorate-General, European Commission, Rue Froissart 101, B-1049 Brussels
영국	Animal Health	ahitchelmsford@animalhealth.gsi.gov.uk	+ 44 (0)1245 358383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the Food Standards Agency	imported.food@foodstandards.gsi.gov.uk	+ 44 (0)20 7276 8018	Imported Food Division
	Port Health	www.porthhealth.co.uk		

나. 잔류농약 허용치 관련

국가명	웹사이트
Austria	http://www.bfl.at http://www.lebensministerium.at
Sweden	http://www.slv.se/HeadMenu/livsmedelsverket.asp http://www.kemi.se
Portugal	http://www.dgpc.min-agricultura.pt/fitofarma.htm
Germany	http://www.bba.de
Ireland	http://www.pcs.agriculture.gov.ie
Italy	http://www.sanita.it/alimvet
Netherlands	http://www.ctb-wageningen.nl http://www.bib.wau.nl/gbk
Finland	http://www.ntt.fi/english
France	http://www.agriculture.gouv.fr/alimentation/modeact
Greece	http://www.minagric.gr/ http://www.minagric.gr/en/2.2.1.html
United Kingdom	http://www.pesticides.gov.uk/legislation/MRLs_Legislation/mrl.htm
Belgium	http://cmlag.fgov.be http://www.fttiweb.fgov.be/
Denmark	http://www.mst.dk http://www.fdir.dk
Spain	http://www.mapa.es/productosfitos/menuconsultas.htm